

# 부천시 오정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

의안 번호	제393호
의결 년월일	2009. 4. 6. (제151회)

제의년월일 : 2009. 4. 3.

제 의 자 : 부천시의회의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「부천시 오정구 인사위원회」 위원을 추천하기 위함.

## 2. 「부천시오정구인사위원회」 위원 추천 대상자

구분	소속	직위	성명 (생년월일)	주요경력
위원	까치울중학교	교장	임오경 (54. 6.10)	◦상도중학교 교감('03. 3. 1 ~ '08. 2.28) ◦까치울중학교 교장('08. 3. 1 ~ 현재)

## 3. 관계법령 【제9조의2 (인사위원회의 구성)】

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
1. 임명위원 중에는 여성이 1명 이상 있어야 한다.
2. 위촉위원 중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1명 포함되어야 하고,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퇴직한 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.